

의안번호	2215610
의 퇴 인	우재준의원
회 답 일	2026.1.12 .
추 계 번호	25D72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6억 9,500만원, 2031년 38억 1,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85억 3,300만원(연평균 37억 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3,695	3,604	3,674	3,744	3,817	18,533	3,707

주: 본 추계는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1조의13 (위자료산정위원회의 설치)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으로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위자료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제1항)	의무규정
	안 제81조의14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제2항)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4. 공인된 대학의 의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의무규정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제3항)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2명 5. 공인된 대학의 의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1명 6. 경제학 또는 통계학 교수 1명 7.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안 제81조의16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의무규정
	안 제81조의18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음(제2항) 1. 산업재해 분야 전문위원회 2. 의료과오 분야 전문위원회 3. 교통사고 분야 전문위원회 4.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분야 전문위원회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	재량규정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81조의20 (운영지원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지원단을 둠(제1항)	의무규정
		운영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함(제2항)	의무규정
		운영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안 제81조의21 (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위자료 산정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	재량규정
	안 제81조의22 (의견수렴)	위원회는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항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81조의13(위자료산정위원회의 설치)	회의참석수당 (위원회, 전문위원회)	○	-
	안 제81조의14(위원회의 구성)			
	안 제81조의16(위원회의 회의)			
	안 제81조의18(분야별 전문위원회)			
2	안 제81조의20(운영지원단)	인건비·기본경비· 사업비·자산취득비 (운영지원단)	○	-
	안 제81조의21(조사·연구의 의뢰)			
	안 제81조의22(의견수렴)			
	안 제81조의20(운영지원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위자료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안 제81조의13·제81조의14·제81조의18 등), 운영지원단의 인건비·기본경비·사업비·자산취득비(안 제81조의20부터 제81조의22까지)를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위자료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와 전문위원회의 추가재정소요는 법관이 아닌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 그 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81조의14¹⁾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1조의14(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4. 공인된 대학의 의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하되, 법관 3명을 제외한 10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의참석수당 지급대상 인원은 10명임

- 안 제81조의18²⁾는 전문위원회를 분야별로 둘 수 있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추계에서는 양형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전문위원회 6개를 두되 각 전문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등 총 10명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가정함. 수당지급 대상은 각 7명임

- 본 추계에서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회의개최횟수는 최근 5년간 양형위원회의 회의개최실적을 참고하여, 위원회는 연 8회, 전문위원회는 연 7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양형위원회 및 소속 전문위원회 회의개최실적: 2021~2025년

(단위: 회)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양형위원회	7	8	8	8	7	8
전문위원회	5	8	8	7	6	7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 회의참석수당은 대법원의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³⁾과 그동안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사례를 참고하여, 회의참석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3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4.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2명
5. 공인된 대학의 의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1명
6. 경제학 또는 통계학 교수 1명
7.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1조의18(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자료 산정기준의 설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분야 전문위원회
2. 의료과오 분야 전문위원회
3. 교통사고 분야 전문위원회
4.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분야 전문위원회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

③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분야별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후단 생략>

- 3)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참석수당) 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원(연구반원, TFT팀원 등

1회당 200,000원을 지급하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 위원회의 지원조직인 운영지원단의 정원은 양형위원회의 사무기구(정원 31명)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 2025년 기준 양형위원회 사무기구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음

[표 3] 양형위원회 사무기구의 직급별 정원: 2025.12. 기준

(단위: 명)

구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공안직	법원사무직	1	1	9	4	9	2	—	26
	통계직	—	—	—	—	1	—	1	2
속기직		—	—	—	—	—	—	3	3
합계		1	1	9	4	10	2	4	31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5년 기준 양형위원회 사무기구의 직급별 보수연액은 다음과 같음

[표 4] 양형위원회 사무기구의 직급별 보수연액: 2025년

(단위: 천원)

구분		직급	급여체계	1인당 보수연액(평균)
법원공무원	공안직	2급	연봉제	133,660
		4급	연봉제	107,326
		5급	연봉제	88,277
		6급	호봉제	70,825
		7급	호봉제	60,579
		8급	호봉제	45,735
		9급	호봉제	38,357
	속기직	9급	호봉제	40,048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 운영지원단의 기본경비는 대법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중(6.47%)⁴⁾을 적용하고, 사업비는 現 양형위원회의 사업비(735,000천원)를 참고하여 추정함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1일당 15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전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②·③ (생략)

4) 2025년 일반회계 기준 보수액(1,393,531백만원) 대비 기본경비(90,168백만원) 비중은 6.47%임

[표 5] 양형위원회 소관 예산: 2025년 기준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1. 운영지원단 운영비(기본경비로 이관)	-	
2. 의견수렴(공청회 등)	90,000	
3. 양형기준책자	96,000	
4. 양형정책 및 양형심리절차연구	290,000	
5. 양형제도 개선 조사여비	18,000	
6. 외국 양형자료 수집 및 조사여비	41,000	
7. 일용임금, 사회보험료	25,000	
8. 체험형 사법프로그램	175,000	
합계	735,000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임금 평균상승률,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단가⁵⁾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함
- 다만, 안 81조146)에서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現 양형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현직 법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 위원회의 상임위원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5)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9.30.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 요율(%)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1조의14(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안 제81조의13·제81조의14·제81조의18 등)

□ 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외부위원 수에 회의 개최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위원회) 외부위원 10명, 회의개최횟수 연 8회

○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수 6개, 외부위원 각 7명, 회의개최횟수 연 7회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7,500만원씩 5년간 총 3억 7,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회, 개,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위원회	외부위원 수	10	10	10	10	10	—
	회의개최횟수	8	8	8	8	8	—
	회의참석수당 단가	0.2	0.2	0.2	0.2	0.2	—
	소계	16	16	16	16	16	80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수	6	6	6	6	6	—
	외부위원 수	7	7	7	7	7	—
	회의개최횟수	7	7	7	7	7	—
	회의참석수당 단가	0.2	0.2	0.2	0.2	0.2	—
	소계	59	59	59	59	59	294
합계		75	75	75	75	75	374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운영지원단(안 제81조의20부터 제81조의22까지)

1) 인건비

□ 개정안에 따른 운영지원단(31명)의 인건비는 보수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보수) 직급별 인원내 직급별 1인당 평균 보수연액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적용
- (기관부담금) 법원공무원의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적용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른 운영지원단의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7] 운영지원단의 인건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	2급	140	144	147	150	154	—
	4급	113	115	118	121	124	—
	5급	833	853	874	895	916	—
	6급	297	304	311	319	327	—
	7급	635	650	666	682	698	—
	8급	96	98	101	103	105	—
	9급(공안)	40	41	42	43	44	—
	9급(속기)	126	129	132	135	139	—
	소계	2,280	2,334	2,391	2,448	2,507	11,960
기관부담금		299	308	318	328	338	1,591
합계		2,580	2,643	2,709	2,776	2,845	13,55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기본경비

□ 기본경비는 대법원의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2025년 일반회계 기준 보수액(본부 인건비+소속기관 인건비, 1,393,531 백만원) 대비 기본경비(90,168백만원)의 비율(6.47%)을 적용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른 운영지원단의 기본경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8] 운영지원단의 기본경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액	2,280	2,334	2,391	2,448	2,507	—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중	6.47%	6.47%	6.47%	6.47%	6.47%	—
기본경비	148	151	155	158	162	77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사업비

- 운영지원단의 사업비는 2025년 기준 양형위원회 예산(735,000천원)을 참고하여 추정하되, 그 금액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른 운영지원단의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9] 운영지원단의 사업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사업비	735	735	735	735	735	3,6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운영지원단 정원(31명)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는 추계기간의 첫해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표 10] 운영지원단의 자산취득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인원	31	—	—	—	—	—
자산취득비 단가	5.078	—	—	—	—	—
자산취득비	157	—	—	—	—	15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른 운영지원단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6억 2,000만원, 2031년 37억 4,2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81억 5,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운영지원단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운영지원단	인건비	2,580	2,643	2,709	2,776	2,845	13,553
	기본경비	148	151	155	158	162	774
	사업비	735	735	735	735	735	3,675
	자산취득비	157	—	—	—	—	157
	합계	3,620	3,529	3,599	3,669	3,742	18,1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36억 9,500만원, 2031년 38억 1,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85억 3,300만원(연평균 37억 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비상임위원 회의참석수당 (안 제81조의13 등)	75	75	75	75	75	374	75
운영지원단 인건비 등 (안 제81조의20 등)	3,620	3,529	3,599	3,669	3,742	18,159	3,632
합계	3,695	3,604	3,674	3,744	3,817	18,533	3,707

주: 본 추계는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의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